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320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3월 5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장애인의 회의 중계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삭제하여 의장에게 그 운영상의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·보완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한국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회의 중계 시청 지원 방안을 삭제함(제49조의2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한국수화언어법」, 「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원안과 같음.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의 실시 범위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9조의2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<u>한한다.</u>)를 그 대상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9조의2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한다.</u> <u>이하 이 조에서 같다.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의 실시범위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제49조의2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<u>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의 실시범위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제1항 중 “한한다.”를 “한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의 실시범위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의2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<u>한한다.</u>)를 그 대상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9조의2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<u>한한다.</u> <u>이하 이 조에서 같다.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의 실시범위·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